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9호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5 4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문 화 관 광 과 2
- 공 고 제 1 7 7 0 호 2022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신청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3
- 공 고 제 1 7 8 2 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16
- 보 건 소 공 고 제 8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품 위 생 과 47

고 시

- 고 시 제 1 0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1754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구립예술단 단원의 구성과 위,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풍물단)에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의 위탁관리 조항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추가 : 안 제24조제3항
- 안 제24조제3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안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7조제2항 및 4항, 제28조제1호, 제29조제2항
- 훈련장의 직무 조항 신설 : 안 제26조

- 구립예술단 단원의 해촉 기준 보완 : 안 제28조
- 구립예술단 위탁관리 조항 보완 :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0. 1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 ☎ 453-2134,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립예술단 단원의 구성과 위,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 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풍물단)에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의 위탁관리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직책 추가 : (안 제24조제3항)
- 안 제24조제3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안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4항, 제28조제1호, 제29조제2항)
- 훈련장의 직무 신설 : (안 제26조)
- 구립예술단 단원의 해촉 기준 명료화 : (안 제28조)
- 구립예술단 위탁관리 조항 보완 : (안 제30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술감독 1명,”을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휘자 및 반주자는”을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시”로 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반주자는”을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주자 및”을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9조제2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남동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

에 따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u>예술감독 1명</u> ,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제2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u>지휘자 및 반주자</u> 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단원의 자격) ----- ----- -----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u>지휘자</u> ,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생략) ③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 ② (현행과 같음)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27조(단원의 위촉)

① (생략)

② 반주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생략)

제2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2. ~ 3. (생략)

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27조(단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주자, 훈련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반주자, 훈련장,-----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단원의 해촉)

1. -----반주자, 훈련장-----

2. ~ 3. (현행과 같음)

4. 구립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u>반주자</u>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관리) ① ~ ② (생략)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주자, 훈련장 ----- ----- 제30조(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단의 운영을 남동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순증가액은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훈련장 직위에 대한 수당 등의 예산이 추계될 것으로 판단됨.
- 제24조(구성), 제27조(단원의 위촉), 제29조(예산의 지원)의 개정으로 추계되는 비용은 약 7,848천원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참고자료]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공고 제 2022 -1770호

2022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2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27.(화) ~ 10. 7.(금) (10일간)
2. 신청대상 : 남동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잦은 민원발생,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3. 지정업체 : 3개소 (정비업 2개소, 매매업 1개소)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10. 7.(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처 : (21589)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별관1층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이메일 접수(poohkw15@korea.kr) 또는 팩스 접수(FAX 032-453-2919)
 - ※ 팩스 발송 후 032-453-2822로 연락 필수

5. 제출 서류

[공통서류 (필수 서류)]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공통서류 (평가 서류)]

- 종사원에 대한 자체 또는 협회교육(수료증) 등 증빙서류
- '고객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결과 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년 내 신규채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종사원증, 취업확인서 등)
-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매매업에 한함)

[우대가점 (평가 서류)]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우리구 행사참여 또는 기부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심사방법

- 서류 및 관련부서 위법사항 여부 사전 검토
 - 결격사유 사전 검토 및 증빙자료 검토
- 현장확인 (자체평가표)
 - 평가단 : 자동차관리과 직원 및 관련 조합에서 선정된 자
 - 1차 서류검토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지정 우선순위 : 지정순위표에 기재 후 우대가점을 반영한 뒤 상위 업체 선정
 - 매매업 1개업체, 정비업 2개업체를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분야의 고득점자를 선정하여 최종 3개 업체 선정
 - 평가배점 : 고객서비스(30), 사업장 시설 및 환경(30), 추가 고려사항 (40)
- 우대가점
 -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인천시 또는 남동구 표창 실적(2점)
 -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남동구에 행사참여 또는 기부실적이 있는 업체(2점)

7. 지정 통보 및 지정증, 표지판 교부 : 11월 중 (별도 통보)

8.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9. 유의사항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신청자격에서 제외대상인 경우
 - 신청부터 지정까지 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 신청업체가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붙임 1.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2. 모범사업자 평가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자동차관리팀 453-28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6.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782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안 제11조 ~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별첨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안 제11조 ~ 제2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7조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안」 (행정안전부, 2022. 9. 16.)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지역의 특산물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남동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

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남동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남동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남동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남동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참고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

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 ○○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참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6.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OO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OO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OO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OO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OO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OO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000과장
2. 기금출납원: 000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00시 00구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8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9. 29.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9. 29. ~ 2022. 10.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1992- 0199139	연경루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7 (구월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6-30	2022-09-29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9. 29.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1번길 17 (간석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3번길 42 (구월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란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란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1번길 17 (간석동)	2009.11.16.	간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2.9.2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11번길 1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7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3-21, 73-22, 7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번길 7 (간석동)	2009.11.16.	간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2.9.2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5번길 7 기초구간에위치하여7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3번길 42 (구월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13 (논현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74-7 (장수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74-6 (장수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80-21 (고잔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8 (간석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40 (간석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30 (간석동)	2022.9.23.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